

##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5.  
인 천 광 역 시 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구분	채용 예정 계급	채용 분야	채용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계	남	여	양성	
계			61	25		36	
경력 경쟁채용	지방 소방사	소 계	58	23		35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예 방	6	6			
		구 급	35			35	
		화 학	1	1			
		차량운전	9	9			
		차량정비	4	4			
		통 신	3	3			
	지방 소방교	구급상황 관리	1			1	
	지방 소방위	헬기조종	2	2			세부일정 별도공고

-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1] 참조
- ※ 경력경쟁채용의 소방사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교·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 시험시간
  - 경력경쟁 채용 : 10:00 ~ 11:00(60분)

## 2 시험방법

-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단, 소방항공 필기시험 미 실시)
  - 경력경쟁시험 중 항공조종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 시행하며 소방청에서 실기시험을 주관할 예정임.(세부일정 별도 공고 예정)
    - 실기시험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평가
      - 기본비행, 임무형 비행, 기본 계기비행, 항공안전평가 등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가과목 40%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단, 구급상황관리 분야 체력시험 미 실시)
- ※ 도핑테스트 실시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 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단,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부담)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로 대체

##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면접시험 운영 및 장소 일정은 추후 소방청 계획에 따라 별도 공고

### ※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상황관리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헬기조종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3 응시자격

####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거주지 제한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01.01. ~ 1997.12.31.
<p>※ 항공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1971.1.1. ~ 1994.12.31.)</p> <p>※ 응시사항 연령의 연장</p> <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기사·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p> <p>(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p>		

**라.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경력경쟁채용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증은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소방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증</li> <li>* 경력 인정범위 : 소방관련 업체(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근무한 경력</li> </ul>

채용분야	용 시 자 력 및 경 력 제 한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 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li> <li>-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li> </ul> </li> <li>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li> <li>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li> <li>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li> <li>5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li> <li>6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li> <li>7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li> <li>8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필요)로 근무한 경력</li> <li>9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li> <li>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li> </ul> </li> </ul> </li> </ul>
운 전 (자동차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6)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li> <li>② 대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li> <li>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li> <li>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li> <li>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li> </ul> </li> </ul> </li> </ul>
차량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1, 2, 3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제조 및 특장차량 제조 정비업체</li> <li>②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업무 제외)</li> <li>③ 군복무 기간 중 수송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필요)</li> </ul> </li> </ul>

채용분야	용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통신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li> </ul>
상황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li> <li>○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공 (조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법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li> <li>- 「항공안전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li> <li>-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li> <li>-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li> <li>-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전 비행시간 포함)</li> <li>※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li> <li>※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li> </ul>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별표5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일정

원서접수(인터넷)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9. 18(월) ~ 20(수) (09:00 ~ 21:00)	필기시험	10. 17(화)	10. 28(토)	11. 13(월)
	체력시험	11. 13(월)	11. 20(월) ~ 11.21(화)	11. 24(금)
△ 취소기간 : 9. 18(월) ~ 25(월)	신체검사	11. 24(금)	11. 30(목) ~ 12. 1(금)	12. 8(금)
	면접시험	12. 8(금)	12. 22(금)	12. 29(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 ※ 항공분야(조종사)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소방청 주관 시험으로 시행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 조치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나. 의사상자 가산특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
-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